

2022년도  
본청1차 (가족행복과, 민원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2022년도 본청1차(가족행복과, 민원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 기간 및 범위

- 2022. 2. 21. ~ 2. 25.(5일간) / (범위)2019. 6월 이후

###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 감사결과 》

### ■ 총 지적건수 : [18건] 가족행복과 10건, 민원과 8건

###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가족행복과(주의5, 시정5), 민원과(주의5, 시정3)
- 재정상 조치 : 가족행복과(2건, 60,720원), 민원과(2건, 3,430,1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 없음

## 《 수범사례 》

### 가족행복과

### ■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사업 추진 /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 충북도내 최초로 2021년 10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추진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보호 선도역할 수행

### 민원과

### ■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

- 관내 단독주택 및 경로당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우편함 보급

- 붙임 1. 주요 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8부. 끝.

# 본청1차(가족행복과, 민원과)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 가족행복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0건	주의 5 시정 5		2건 69,720원
1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소홀	시정		환급·추급 21,320원
2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3	◦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4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주의		
5	◦ 수탁기관 위탁사항 및 성과평가 결과 미공개	시정		
6	◦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 교부조건 명시 및 정산 소홀	시정		
7	◦ 레인보우영동연수원 협약내용 미이행 및 정산 소홀	주의		
8	◦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출연료 원천징수) 소홀	시정		추징 48,400원
9	◦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10	◦ 물품 구입 집행 전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 민원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8건	주의 5 시정 3		2건 3,430,100원
1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소홀	시정		환급 14,240원
2	◦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3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주의		
4	◦ 회계관계 공무원 대리지정 업무 부적정	주의		
5	◦ 공금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세입조치 3,415,860
6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리 업무 소홀	주의		
7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소홀	시정		
8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 가족행복과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21,320원(환급 7,300원, 추급 14,02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소홀

【현 황】

- 시간외수당 정액분 과오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연번	지급월	대상자	산출기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정당지급액(A)	실지급액 (B)	차액 (C=A-B)
			정규근무 일수	월간출근 근무일수 (8시간 이상)	시간외 단가			
1	2019.8.	**7급 A	21	19	10,509	105,090	91,070	14,020
2	2021.9.	**7급 B	19	14	10,952	102,220	109,520	-7,300

###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6항에 따르면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는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99호, 2022.1.19.)에 의하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로 규정함.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현황】** 과 같이 \*\*주사보 A외 1명, 총 2건에 대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부족 또는 초과지급하는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총 21,320원을 과오지급 함.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과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1,320원을 환급 또는 추급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1. 민원처리 지연 내역

민원명	처리 기간	민원인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처리자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일	-	1AA-2001-593543	20.01.30.	20.02.07.	20.02.10.	1	-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일	-	1AA-2001-593722	20.01.30.	20.02.07.	20.02.10.	1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7일	-	1AA-2001-594984	20.01.30.	20.02.07.	20.02.10.	1	-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판매 업체 신고	7일	-	1AA-2008-0564298	20.08.18.	20.08.26.	20.08.27.	1	-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판매 업체 신고	7일	-	1AA-2008-0564279	20.08.18.	20.08.26.	20.08.27.	1	-

### 2. 처리결과 통보 부적정 내역

민원제목	민원인	신청일	신청번호	답변통보방식 (민원인요구)	시행문 결재여부	비고 (처리자)
구입한 제품의 약취 및 변질	-	19.10.04.	1AA-1910-075512	서면	부 [내부결재]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식장 최소보증인원	-	20.08.24.	1AA-2008-0870447	서면	부 [내부결재]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터	-	21.02.05.	1AA-2102-0172622	서면	부 [내부결재]	-

### 【위법부당사항】

-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정민원을 제외한 질의, 건의, 기타, 고충민원의 온라인국민 접수창구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정확·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에 따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음.

민원유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2018.07.25., 2020.05.28.)에 따르면 민원처리 결과 및 답변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처리(부서장 결재 후 국민신문고 답변란에 입력·통보)하되 민원인이 ‘서신통보’를 요청한 경우 ‘대외시행문’으로 작성·결재토록 하며, ‘서신’ 통보를 생략할 경우 ‘서신 미통보 사유입력’란에 상세내역을 입력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2020. 1. 30일 접수된 민원 5건에 대해 지연 처리하였고, [현황2]와 같이 민원인이 서면통보를 요청한 3건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시행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내부 결재로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1. 처리 지연 내역[공개]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처리기한	처리완료일	지연일	처리자
20.07.31.	-	숙박업 현황 파악	20.08.13.	20.08.14.	1일	-
20.08.12.	-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관련 문의	20.08.26.	20.08.27.	1일	-

### 2. 처리 지연 내역[부존재]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부존재결정시 처리기한	처리완료일	지연일	처리자
19.08.06.	-	식품 표시기준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19.08.14.	19.08.16.	1일	-
19.08.27.	-	누룽지 식품공장 목록및 품목제조보고서를 열람하고 싶어서요	19.09.04.	19.09.06.	2일	-
19.10.26.	-	관내 고추가루 제조업체	19.11.05.	19.11.06.	1일	-
20.01.13.	-	각 지역 지자체에 등록된프랜차이즈점 본점주소랑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20.01.21.	20.01.22.	1일	-
20.07.06.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로 운영 중인 편의점 리스트	20.07.14.	20.07.15.	1일	-
20.07.09.	-	어린이집 감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20.07.17.	20.07.21.	2일	-
20.07.10.	-	최근 5년간 아동복지법위반시설 행정처분 내역 정보공개청구	20.07.20.	20.07.22.	2일	-
20.09.03.	-	전국 호텔 중 특급호텔 이상의 신축호텔에 대한 정보	20.09.11.	20.09.14.	1일	-
20.09.11.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된 병,의원 리스트	20.09.21.	20.09.24.	3일	-
20.11.09.	-	GS25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 확인	20.11.17.	20.11.18.	1일	-
21.01.28.	-	각 지자체 소재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입찰공고	21.02.05.	21.02.08.	1일	-
21.02.11.	-	정보공개청구 (식품 포상금 예산관련)	21.02.23.	21.02.24.	1일	-
21.04.19.	-	관할 내 정보신청의 건	21.04.27.	21.04.28.	1일	-
21.06.15.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및 영유아보육시설 설립현황	21.06.23.	21.06.28.	3일	-



##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P.90)에 따르면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7일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정보공개결정 2건, 정보부존재 결정 14건에 대하여 규정상 명시된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처리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차용시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성정책팀	여성안심보안관	1	'20.04.01.~11.30.	미 실시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미 실시	
여성정책팀	군민회관 환경관리	2	'20.01.02.~12.29.	미 실시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청소년 드림팀	아동복지교사 지원	7	'20.01.01.~12.31.	미 실시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청소년 드림팀	황간문화의집 환경정리	1	'20.01.02.~12.28.	미 실시	8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평생학습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자료관리(개관연장)	3	'20.01.02.~12.31.	미 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평생학습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환경관리	1	'20.01.02.~12.31.	미 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평생학습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자료관리(주말)	1	'20.01.11.~12.27.	미 실시	6시간	6시간	6시간	미 실시	
여성정책팀	여성안심보안관	2	'21.04.05.~11.30.	8시간	해당 없음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여성정책팀	군민회관 환경관리	2	'21.01.04.~12.29.	미 실시	8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청소년 드림팀	아동복지교사 지원 (○○○ 외6)	7	'21.01.01.~12.31.	미 실시	8시간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청소년 드림팀	아동복지교사 지원 (○○○ 외1)	2	'21.07.12.~12.31. '21.07.19.~12.31.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 실시	미 실시	
청소년 드림팀	황간문화의집 환경정리	1	'21.01.02.~12.28.	미 실시	8시간	7시간	미 실시	미 실시	

※ 가족행복과 제출 감사자료(p.42~43) 재구성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sup>1)</sup>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 그러나, 2020년 이후 가족행복과에서 채용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일부 누락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탁기관 위탁사항 및 성과평가 결과 미공개

【현 황】

○ 민간위탁 수탁자 및 성과평가결과 미공개 현황

연번	사업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성과평가 실시/공개여부	비고
1	너나들이 지역아동센터	○○○	21.1.1.~25.12.31.	부	시기미도래	최초위탁
2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리·운영 위탁용역	□□□	21.1.1.~22.12.31.	부	여/여	
3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	21.1.1.~22.12.31.	부	여/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제18조(성과평가)에는 모든 위탁사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현황】 과 같이 너나들이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외 2건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 후 수탁기관 위탁

사항(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성과평가는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민간 위탁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수탁기관 위탁사항 및 성과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 교부조건 명시 및 정산 소홀

【현 황】

○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 집행내역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내용	비고
			계	군비	자부담		
2020	지역별 관심사업	○○○어린이집	20,500	20,000	500	포장공사(15,500천원) : 건설업등록증 사본 미첨부	
		□□어린이집	20,000	20,000		도배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6개월) → 1년	
		△△△어린이집	20,080	20,000	80	파고라 설치공사(13백만원) : 수입인지(2만원) 미첨부, 하자담보책임기간 미기재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15,400	15,400		외벽도장공사 : 중식·간식비(500천원) 포함	
		▽▽어린이집	21,000	20,000	1,000	종합놀이대 설치공사(21백만원) : 수입인지(2만원), 건설업등록증 사본 미첨부	
		◇◇어린이집	30,092	30,000	92	방수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2년) → 3년	
2021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22,000	20,000	2,000	놀이시설교체공사(22백만원) : 수입인지(2만원), 건설업등록증 사본 미첨부	
		♀♀어린이집	24,519	20,000	4,519	종합놀이대 설치공사(24백만원) : 수입인지(2만원), 건설업등록증 사본 미첨부	
		○□어린이집	24,000	20,000	4,000	종합놀이대 설치공사(24백만원) : 수입인지(2만원), 건설업등록증 사본 미첨부	

### 【위법부당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5조(지방 보조금의 교부신청)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

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의하면 군수는 교부신청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4항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문서에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기준을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에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9건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신청 시 2인 이상의 견적단가 또는 원가계산서, 사업물량의 산출서, 단가조사서, 도면 등을 제출 받아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1인 견적서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별다른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 특히, ◎◎◎어린이집 외벽도장공사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에 공사내용과 관련없는 중식, 간식비 500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청금액대로 보조결정 및 지급함.
- 또한, △△△어린이집 파고라 설치공사 등 보조금으로 지급된 총 5건이 1천만원을 초과한 계약건으로 각각 인지세 2만원을 납부(첨부)하여야 하는데, 납부(첨부)하지 않았으며, 총 공사비 15백만원 이상인 5건의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증(포장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미첨부 되었고 □□어린이집 도배공사 외 2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적정, 기재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서류 미비 및 부적정 집행하였으나 시정·환수조치 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함.

####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누락된 인지세를 징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레인보우영동연수원 협약내용 미이행 및 정산소홀

【현 황】

○ 운영수수료 및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민간위탁사업명	수탁자명	위탁기간	지급일자		비고
			기본수수료	위탁운영비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리·운영	사)○○○○○ ○○○○○	19.1.1.~20.12.31.	19.01.14.	19.01.16.	
				19.04.10.	
			19.05.13.		
			19.10.16.		
		20.01.20.	20.01.20.	20.06.11.	
		21.01.15.	21.01.15.	21.06.16.	
		22.01.19.	22.01.19.		상반기분 지급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연도	편성목	승인내역		집행내역			비고
		내용	금액	집행일자	내용	금액	
2019	자산 취득비	· 교육용 전산장비(프로젝터) 등 구입비 1,900,000원 X 2종=3,800,000원 · 교육용 방송장비 등 구입비 1,000,000원 X 2종=2,000,000원	5,800천원	19.04.12.	가스용 국술 구입	2,700,000원	
				19.08.06.	객실용TV 구입(2대)	780,180원	
				19.08.28.	객실용TV 구입(3대)	1,100,400원	
2020	자산 취득비	· 교육용 방송장비(이퀄라이저)등 구입비	1,486천원	20.01.23.	객실용침대 구입(2개)	500,000원	
				20.12.04.	테블릿PC 구입	270,000원	
				20.12.16.	초음파 가습기	52,000원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계약 체결) 2항에 의하면 “위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2019. 12. 24.와 2020. 12. 21.에 영동군수와 사)○○○○○○○○○○○○○○○○○○○○와 체결한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제7조(운영수수료 등) 3항에는 기본수수료는 당해연도 분기별로 지급, 제9조(위탁운영비의 지급)에는 “을”은 매분기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5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협약함.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정부의 신속집행 추진에 따라 기본수수료 및 민간위탁금을 조기에 지급하여야 상황을 감안하면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호간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 없이 【현황】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9년~ 2020년에는 가스용 국솔 구입 외 5건, 총 5,402,580원에 대해 예산서의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하였으나 정산검사 결과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민간위탁 협약내용 이행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48,4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출연료 원천징수) 소홀**

【현 황】

○ 행사 출연자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연번	성명	지급액	원천징수 (기타소득)			정당 실시급액	비고
			계	소득세	주민세		
계		550,000	48,400	44,000	4,400	501,600	
1	D	350,000	30,800	28,000	2,800	319,200	성악공연
2	E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노래공연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1호 및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가목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3%, 기타소득은 8%를 소득세로 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가족행복과로부터 지방보조금 사업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영동군○○○○○○○○에서는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를 추진하면서 행사 출연자 D 외 1명의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총 5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8,400원(기타소득 8.8%로 산정)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미이행하였고 가족 행복과는 보조금 정산 시 이를 보완하지 않고 정산검사결과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누락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현 황】

## 1.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연도별 개최 내역

연도	개최일	심의안건	비고
2022	2022.02.16.	○ 2021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2021	2021.04.08.	○ 2021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기금운용계획 심의 관련 위원회 미개최
	2021.02.15.	○ 2020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2020	2020.10.16.	○ 2021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 심의 관련 위원회 미개최
	2020.08.13.	○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9	2019.10.24.	○ 2020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 심의 관련 위원회 미개최

## 2.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2019년 9월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임명사항	위촉기간
위원장	-	○○○	-	당연직	-
위원	-	○○○	-	임명직	-
위원	-	○○○	-	신 규	-
위원	-	○○○ ○○○○	-	재위촉	'19.09.10. ~ '21.09.09.
위원	-	○○○○○○○○○○○○○○○○	-	재위촉	'19.09.10. ~ '21.09.09.

### 【위법부당사항】

#### 1. 식품진흥기금 심의규정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 운영 계획 및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기금운용 관련 심의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또는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 심의하지 않고 군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2.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미위촉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가족행복과에서는 [현황2]와 같이 민간(위촉)위원의 임기가 2021년 9월9일까지로 되어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민간위원을 위촉 또는 재위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민간위원을 위촉 또는 재위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물품 구입 집행 전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단위: 천원)

건명	사업량	집행일 (계약일)	계약방법	추정금액	지급액	비고
○○○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중형승합차 1대	19.10.07. (19.11.27.)	조달구매	32,745	30,849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용차량 구입	승용전기차 1대	21.10.06. (21.12.06.)	조달구매	46,940	46,700	

### 【위법부당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와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객관적 위치에서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제도인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집행 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가족행복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용차량 구입> 이상 2건에 대하여 물품 구입을 추진하면서 최종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구매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가족행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과**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14,24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소홀

【현 황】

○ 시간외수당 정액분 과오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연번	지급월	대상자	산출기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정당지급액(A)	실지급액 (B)	차액 (C=A-B)
			정규근무 일수	월간출근 근무일수 (8시간 이상)	시간외 단가			
1	2019.8.	**6급 F	21	14	11,634	108,590	116,340	-7,750
2	2020.9.	**8급 G	21	11	9,733	71,380	77,870	-6,490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6항에 따르면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는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99호, 2022.1.19.)에 의하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때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로 규정함.
-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현황】 과 같이 \*\*\*\*주사 F 외 1명, 총 2건에 대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잘못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총 14,240원을 과오지급 함.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과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4,240원을 환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보공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1. 정보공개 처리 지연 내역[부존재]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부존재결정시 처리기한	처리완료일	지연일	처리자
19. 12. 18.	-	2019년도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내역	19. 12. 27.	19.12.30.	1일	-
20.01.23.	-	청구인의 정보열람(초본등본 차량 등록번호 조회 등 열람 및 발급 사실)	20.02.04.	20.02.05.	1일	-
20.07.23.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주민등록 전산 열람기록 청구-총복	20.07.31.	20.08.05.	3일	-
20. 11. 19.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내역	20. 11. 27.	20.11.30.	1일	-
20. 11. 19.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내역	20. 11. 27.	20.11.30.	1일	-
20. 11. 25.	-	전국적으로 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20. 12. 03.	20.12.08.	3일	-
20. 11. 25.	-	개인인적사항 조회 여부 확인	20. 12. 03.	20.12.04.	1일	-
20. 12. 14.	-	충청북도 외국인 등록 현황 (국가별) 을 알고 싶습니다.	20. 12. 22.	20.12.24.	2일	-
21.01.21.	-	주민등록원초본과 인감증명서의 열람에 대하여	21.01.29.	21.02.03.	3일	-

### 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연 내역

민원명	처리 기간	민원인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처리자
구토지대장상 두 번째 소유자로 기재된 ****이 본인과 동일인물인지 여부	7일	-	1BA-2002-0655858	20.03.19.	20.03.27.	20.03.30.	1	-

【위법부당사항】

### 1. 정보공개 처리 지연 내역[부존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P.90)에 따르면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7일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정보부존재 결정 9건에 대하여 규정상 명시된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처리 한 사실이 있음.

## 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연 내역

-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정확·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에 따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음.

민원유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현황2]와 같이 2020. 3. 19일 접수된 민원 신청 번호 IBA-2002-\*\*\*\*\*에 대하여 규정상 명시된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처리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민원팀	민원안내도우미	1	2020.5.1. ~ 10.23.	미 실시	해당 없음	미 실시	미 실시	해당 없음	
지적 정보팀	지적업무보조	1	2020.3.2. ~ 8.31.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해당 없음	
부동산 관리팀	개별공시지가 보조	2	2020.1.2. ~ 8.31.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미 실시	해당 없음	
민원팀	여권민원 안내 및 안전요원	1	2021.1.4. ~ 8.31.	8시간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지적 정보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보조	2	2021.2.1. ~ 9.30.	8시간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부동산 관리팀	개별공시지가 보조	2	2021.1.4. ~ 8.31.	8시간	미 실시	6시간	미 실시	해당 없음	

※ 민원과 제출 감사자료(p.31~32) 재구성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sup>2)</sup>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0년 이후 민원과에서 채용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 을 일부 누락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대리지정 업무 부적정

【현 황】

### 1.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현황

지정자	대리자	지정기간	담당사무	사유
H	I	2020.5.19.~5.25.	분임재무관	장기재직 휴가
H	I	2020.6.23.~6.30.	분임재무관	장기재직 휴가

### 2. 지출 부적정 처리내역

회계관직 (성명)	분임재무관 부재일	원인행위				지급명령 승인자	비 고
		원인행위 승인자	원인번호	건수	금액(원)		
합 계				16	5,257,100		
H	20.05.20.	J	172~179	8	3,220,000	J	분임재무관(H) 부재 중 직무대리자(I)를 지정하여 내부결재 하였으나, 실제 e호 조상에는 **팀장(J) 이 원인행위 및 지급 명령을 모두 승인 처리함
H	20.06.23.	J	217~224	8	2,037,100	J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의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분임재무관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2020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임재무관 회계관직을 H에서 I로 대리지정 하였으나, 2020년 5월 20일과 6월 23일에 실제 e호조 시스템상에서의 지출은 대리지정에 없던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J가 승인하여 분임 재무관과 지출원 직무를 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총16건, 5,257,100원의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세입조치 3,415,8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금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1. 민원과 공금계좌 보유 현황(2022.1.31.기준)

개설부서	계좌번호	사용용도	계좌개설일자	계좌잔액(원)	비고
민원과	301-****-****-**	2022 일상경비	2021.01.04.	69,720,690	
민원과	318-**-*****	신용카드 결제	1998.04.07.	19,090,800	○유류 포인트 입금 1,877,150원('19.11.20.) 574,660원('20.11.20.) 414,290원('21.11.25.)
민원과	301-****-****-**	부서운영비	2011.11.11.	2,633,010	
민원과	318-**-*****	전자민원수수료	1999.02.23.	0	
민원과	301-****-****-**	여권수수료	2010.02.01.	0	
민원과	301-****-****-**	민원수수료	2014.06.10.	13,600	
민원과	301-****-****-**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수수료	2018.11.26.	0	
민원과	318-**-*****	부가가치세	2007.05.23.	549,756	○2020.12.31.기준 잔액 549,760원 ○2021.12.31.기준 잔액 711,286원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6조(회계연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같은 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에 의하면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해야

하며, 「영동군 자체감사 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모든 부서는 공금계좌의 투명한 관리 및 회계 관련 부조리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매 분기마다 자체 점검하고, 각 계좌별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입출금된 내역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관으로 점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이번 자체감사기간(2022. 2. 21. ~ 2. 25.) 중 민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점검한 결과, [현황1]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는 2019년~2021년 기간 중 3차례의 유류포인트 입금내역(2,866,100원)이 발생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잔존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통장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원인불명의 금액(549,760원)이 계좌에 남아있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공금계좌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공금계좌에 남아있는 유류포인트 및 잔액에 대하여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도로명 건물번호판 조사 현황

연도	계획			결과			비고
	대상 (건물번호판)	기간	조사방법	결과보고 여부	훼손·망실	정비계획 수립여부	
2019	13,500	3월~5월	위탁	부	1,385	여	2018-2019년도분
2020	15,318	1월~4월	위탁	부	3,435	부	대상자에게 재교부 안내
2021	17,075	1월~6월	위탁, 자체	여	2,047	여	

【위법부당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에서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군수는 연 1회 이상 훼손되거나 없어진 주소정보시설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며, 조사결과 훼손·망실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매년 건물번호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 전수조사결과를 알 수 없으며, 2020년도에는 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또한, 2019년 전수조사결과 노후로 인한 훼손·망실된 1,385개의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일괄무상교체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 건물번호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에 기교체된 ○○○○길 ○-○○ 외 75건에 대한 별도 조치계획 없이 일괄교체 추진하는 등 건물번호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소홀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현황

연번	납부자명	부과금액 (원)	부과일자	독촉장 발송일자	최종 납기일자	비고
1	김○○	3,577,900	18.09.04.	19.07.03.	22.02.28.	'20.12.11. 압류예고통지
2	김○○	1,273,000	20.11.18.	21.06.01.	22.02.28.	
3	김○○	1,273,000	20.11.18.	21.06.01.	22.02.28.	
4	박○○	1,046,000	20.12.30.	21.06.01.	22.02.28.	
5	박○○	1,046,000	20.12.30.	21.06.01.	22.02.28.	
6	박○○	1,046,000	20.12.30.	21.06.01.	22.02.28.	
7	박○○	1,048,000	20.11.18.	21.06.01.	22.02.28.	
8	박○○	1,500,750	20.12.04.	21.06.01.	22.02.28.	
9	박○○	1,500,750	20.12.04.	21.06.01.	22.02.28.	
10	박○○	1,500,750	20.12.04.	21.06.01.	22.02.28.	
11	손○○	10,000,000	20.11.16.	-	22.06.30.	
12	정○○	7,041,500	20.11.16.	21.06.01.	22.02.28.	
13	영동군○○○○○	6,831,000	20.11.16.	21.06.01.	22.02.28.	
14	장○○	924,000	20.11.16.	21.06.01.	22.02.28.	

【위법부당사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군수)는 같은법 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고,

- 같은법 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를 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조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민원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 1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272일부터 971일까지 납부기한을 두었음. 특히, 1건(김○○)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1일 압류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압류조치를 하지 등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를 소홀히 하여 납부지연을 초래함.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압류대상자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군청사 기계실 냉온수기보일러 교체공사	19,720	주)○○○○ ○○	2021.03.21 (2021.03.21) (2021.06.09)	117,463	21,770	95,693	

###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민원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군청사 기계실 냉온수기보일러 교체공사> 를 자체설계로 추진하여 발주자가 원가계산을 직접 작성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민원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